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내 집·가게 앞 눈 치우기 의무: 누가, 언제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내 집·가게 앞 눈 치우기 의무: 누가, 언제까지, 안 치우면 어떻게 되나

루리

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의 눈을 치울 책임이 있어요. 다만 과태료 같은 직접 제재는 확인되지 않았고,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
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의 눈을 치울 책임이 있어요. 다만 과태료 같은 직접 제재는 확인되지 않았고,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
아래는 서울시와 정책브리핑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내 지역 기준은 꼭 공식 확인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.

1 1.기본 정보

항목	내용
법적 근거	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(건축물 관리자의 관리책임)와 지자체 조례
대상	건축물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
범위	건물 주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
직접 제재	서울시·정책브리핑 안내에서 과태료 규정은 확인하지 못함(공식 확인)

2 2.누가 먼저 치우나요

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순서는 이래요.

- 소유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면: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 순
-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: 점유자, 관리자, 소유자 순

3 3.언제까지 치우나요 (서울시 안내)

상황	기한
낮에 내린 눈	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
밤에 내린 눈	다음 날 오전 11시까지
하루 10cm 이상	24시간 이내

범위는 보도에서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, 주거용·비주거용 건물 모두 대지 경계선에서 1m 안쪽을 기준으로 안내돼요. 다른 지역의 시간과 범위는 해당 조례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4 4.순서대로 하면 이래요

- 내 건물이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구간을 확인해요.
- 눈이 그치면 낮 시간에 치워요.
- 쌓은 눈은 보행로를 막지 않는 곳으로 모아요.

- 얼음이 남으면 제설제나 모래를 뿌려요. 가까운 제설함 위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「행정안전부_제설함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.
- 건물 지붕은 아래 6번을 보세요.

5 5. 안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

- 2019년 정책브리핑 기사는 눈을 치우지 않아도 형사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. 현재 상태는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- 같은 기사는 행인이 눈길에 넘어져 다치면 집주인에게 민사상 보상을 요구한 사례를 소개해요. 직접 처벌이 없어도 책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.
- 서울시 안내 페이지에는 미이행 시 제재 내용이 없고, 조례 원문이나 도로관리과(02-2133-8160) 문의를 권해요.

6 6. 지붕 제설은 따로 있어요

2016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지붕의 제설·제빙 책임도 포함됐다고 안내돼요.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정한 시설물이에요. 지붕 위 작업은 위험해서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은 지붕 위 작업과 심야 제설을 피하라고 해요.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7 7. 가상 예시

상가 1층 임차인 F씨 가게 앞 보도에 밤새 눈이 쌓였어요. 건물주는 다른 곳에 살아요.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점유자가 먼저라서 F씨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는 것이 서울시 기준의 안내예요. 임대차 계약에 관리 책임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.

8 8. 알아 두면 좋은 점

-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에는 「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」가 들어 있어요.
- 제설은 2인 이상이 낮에 하라고 안내돼요.
-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 규약을 확인하세요.

9 체크리스트

- 내 지역 조례의 기한과 범위를 확인했다
- 책임 순서(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)를 확인했다
- 제설 도구와 제설제를 준비했다
- 임대차 계약이나 관리 규약을 확인했다
- 지붕 제설 대상 시설인지 확인했다

10 용어 정리

- **제설·제빙**: 눈을 치우고(제설) 얼음을 없애는(제빙) 일이에요.
- **건축물 관리자**: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.
- **이면도로**: 주택가 안쪽의 폭이 좁은 도로예요.
- **적설하중**: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예요.

11 자주 묻는 질문

Q. 과태료가 있나요?

A. 위 안내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. 내 지역 조례를 공식 확인하세요.

Q. 세입자도 치워야 하나요?

A. 서울시 안내는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점유자가 먼저라고 해요.

12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서울시 안전분야 누리집 제설 안내: <https://news.seoul.go.kr/safe/archives/12294> (<https://news.seoul.go.kr/safe/archives/12294>)
- 정책브리핑 내 집 앞 눈 안 치우면(2019.2.19):
<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ew.do?newsId=148858436> (<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ew.do?newsId=148858436>)
- 정책브리핑 대설 국민행동요령(2024.11.27):
<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6760> (<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6760>)
-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·한파 안내(2018.12.18):
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008&nttlId=67810 (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10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008&nttlId=67810)
-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, 각 지자체 조례: 국가법령정보센터 <https://www.law.go.kr> (<https://www.law.go.kr>) 에서 현행 조문 공식 확인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🔄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3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